

독도,

Dokdo 獨島

세계인이 '독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6 포인트



신용하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영토로 ‘영유’해 왔습니다.

① 고문헌인 『삼국사기(三國史記)』 (김부식 편, 1145년)에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新羅)에 복속하여 병합되었으므로 신라의 한 지방으로 편성했다고 2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동해 상의 아주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독도’는 19세기까지는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렀습니다. 신라는 한국을 형성한 고대국가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서기 512년 이전부터 독도를 ‘인식’했고, 512년에는 독도를 ‘영유’했는데, 일본은 『2008년-10포인트』 (1)에서 겨우 18세기말(1779년)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영유’가 아니라 겨우 독도를 ‘인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산국의 신라에의 병합 사실을 기록한 『삼국사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② 또 다른 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일연 지음, 1285년)에도 신라 지증왕 때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의 항복을 받아내어 우산국이 신라의 한 지방으로 병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는 기록 내용이 일치합니다.

③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고문헌은 다수 있습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1432년 편찬),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1년), 『숙종실록(肅宗實錄)』(1696년조),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1808), 그 밖에 각종 고문헌들과 고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모두 옛 “우산국” 영토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만기요람』 군정편에서는 우산도(독도)를 당시 일본 호칭도 기록하여, “여지지(輿地志)에 이르기를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皆)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于山島)는 왜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 마츠시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19세기에 울릉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 우산도를 “송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만기요람』은 조선의 “우산도(독도)”가 일본에서는 “송도”(지금의 독도)라고 호칭되는데 모두 “우산국” 영토라고 명백히 기록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2008-10포인트』 (2)에서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송도, 오늘날의 일본 호칭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천만 부당한 거짓말임이 『만기요람』 군정편에서 잘 증명됩니다.

④ 또한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 자체가 ‘우산도’는 ‘우산국(于山國)’ 소속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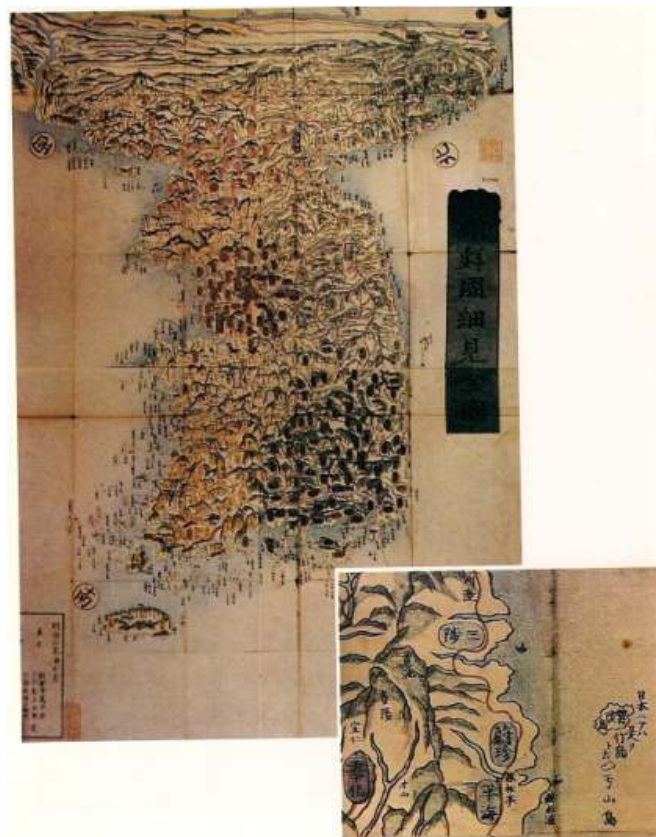
우산국의 큰 섬 ‘울릉도’가 명칭이 고정되자, 그 부속섬인 독도에 늦어도 15세기에 ‘우산도’라는 명칭이 고정되어 붙은 것은 우산도가 우산국의 영토 섬이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⑤ 일본 외무성은 『2008년-10포인트』 (2)에서 ‘우산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다수의 고지도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근거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초기 카톨릭 신부 김대건(金大建)이 1846년에 보고용으로서 프랑스어로 표기한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는 울릉도 동남쪽 정확한 위치에 “독도”를 그리고 ‘Ousan’(우산)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김대건의 <조선전도>(1846). 우산도(독도)를 울릉도 동쪽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Ousan' (우산)이라는 한국어명을 불문자로 표기하여 조선영토임을 표시하였습니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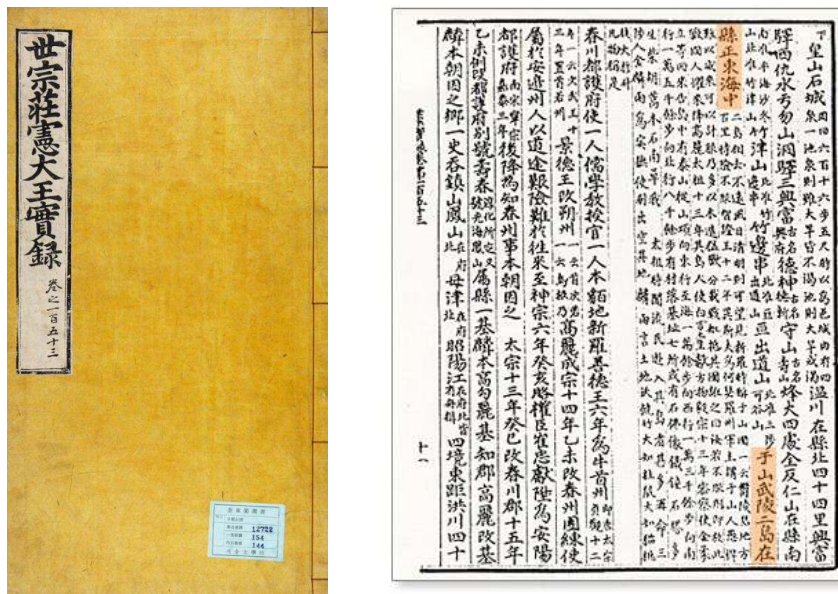


일본인 쇼메자키(染崎延房)의 <朝鮮國細見全圖(조선국세전전도)>(1873).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칠한 옆에 그려서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땅임을 명백히 표시하였습니다. (서울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요, 15세기 조선왕조 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 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① 조선왕조 세종대왕의 통치기록인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는 『독도(우산도)와 울릉도의 2 섬이 강원도 울진현의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보이며, 신라 때에는 우산국이라 칭했다』 고 기록하였습니다. 세종은 “독도(우산)·울릉도 안무사”라는 직책의 관리 김인우(金麟雨)를 두 번이나 파견하면서 통치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의 증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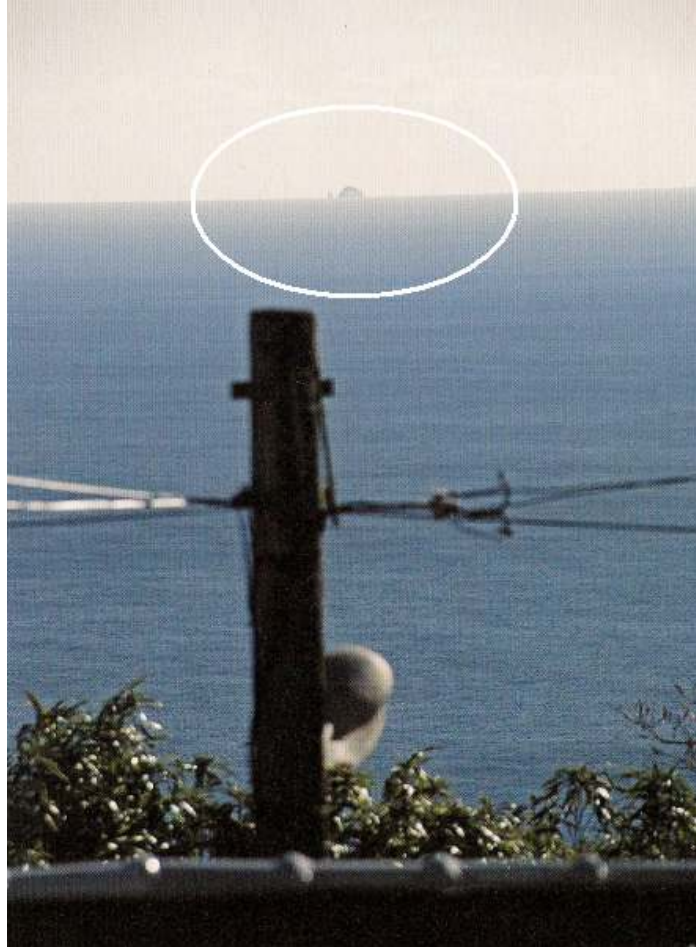


우산도(독도)와 울릉도(울릉도)도 옛 우산국이었다고 기록한 『세종실록』 지리지. (규장각 소장).

②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독도와 울릉도의 2개 섬이 옛날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었다가 병합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날씨가 청명한 경우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동해에는 약간 큰 섬으로 울릉도와 독도와 일본 오키섬의 3섬이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한국 동해안은 멀어서 보이지 않고, 일본 오키섬도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날씨가 청명한 날에만 독도(우산도)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이 사실은 우산도가 곧 독도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15세기에 독도가 세종의 통치를 계속 받은 조선왕국의 영토였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울릉도 도동 깎기등에서', 2008.11.22)



<독도에서 보이는 울릉도>.

(김태환 씨 촬영, 이상태 교수 제공)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권 세계가 물론 항의없이 승복하였습니다.

① 조선왕조 정부는 1481년에 조선왕국의 영토 해설서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편찬 발간하였습니다. 이어 50년 후인 1531년에는 이 책을 증보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발간했는데, 새로 증보한 부분은 매번 “신증”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초판본이 없어도 신증본을 보면 초판부분과 신증부분을 구별하면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지방행정 소속이 명시되면서 설명이 붙어있는 지역은 모두 조선왕국의 영토임을 당시 조선왕국 정부는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재천명하였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목판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는 조선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동해 가운데 2개 섬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으로 조선왕조 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섬임을 당시의 한자문화권 세계에 재천명 공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때 일본이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반박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도 진실 앞에 승복한 것이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선 영토 해설과 함께 8도총도(전국지도)와 도별지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8도총도』, 1531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첫머리에 수록됨.

② 일본 외무성은 최근 『2008-10포인트』 (2)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 『8도총도』에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더 한반도 쪽에 가깝게 안으로 그려져 있으니, 우산도(독도)는 실재하지 않은 가공의 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15세기 일본 지도의 오키섬이 지금의 위치처럼 정확히 그려져 있지 않다고해서 오키섬이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억지입니다.

15세기의 세계 모든 고지도들은 당시의 지도제작 능력으로는 위치가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고지도들도 모두 그러합니다. 『8도총도』에서 우산도(독도)가 울릉도보다 더 한반도 쪽에 가깝게 그려져 있다는 것은 영토문제와 관련해서는, 울릉도가 한국 영토인 한, 울릉도보다 더 한반도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 우산도(독도)는 더욱 명확히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도제도능력이 진보함에 따라 18세기에 들어오면 우산도(독도)는

지금의 “독도” 위치에 “우산도”가 정확하게 그려져서 바로 “우산도”가 “독도”임을 명확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정상기의 『동국전도(東國全圖)』가 그 예입니다.



18세기 후반 <정상기의 동국전도>의 19세기 초 복제품.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전혀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① 일본 외무성은 1960년 한국 정부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일본은 1667년에 편찬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齋藤豊仙 편)에서 울릉도를 ‘竹島’(죽도, 다케시마), 독도를 ‘松島’(송도, 마츠시마)라고 호칭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지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주시청합기』를 열어보니, 이 고문헌의 내용은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에서 고려(한국)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에서 은기(隱岐)를 보는 것과 같아서, 이 두 섬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는 고려(한국)에 속한 섬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隱州)를 한계로 한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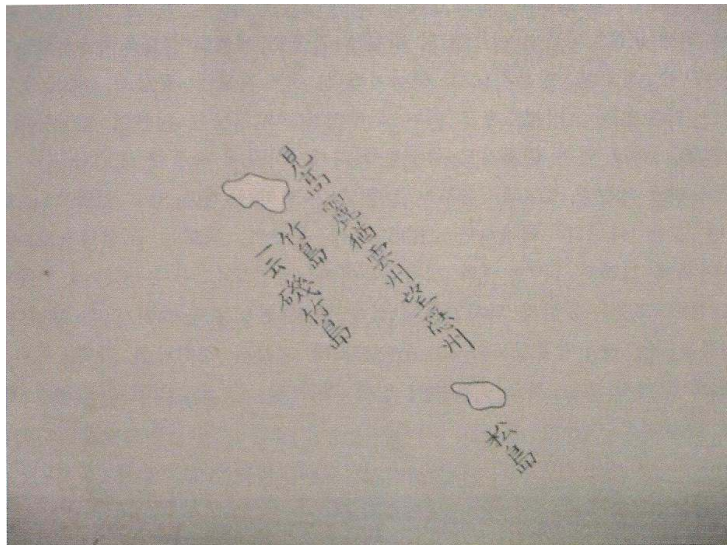
『隱州視聽合記』(卷 1), 國代記部: “隱州在北海中 故云隱岐島……戊亥間 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俗言磯竹島 多竹漁海鹿 按神書所謂五十猛獸)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 故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

독도를 기록한 일본 최초의 고문헌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와 울릉도에서 고려를 보는 것은 마치 운주에서 은주(은기도)를 보는 것과 같으므로 “일본의 서북쪽 영토는 이 은주로서 한계를 삼는다”는 요지의 기록.

일본 최초의 독도기록 고문헌도 독도가 한국영토이며, 일본의 서북쪽 영토는
은기도를 한계로 한다고 기록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② 일본의무성은 이번 『2008-10포인트』(1)에서 1779년에 그려진 『개정일본여
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長久保赤水 편)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
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1846년판 원본은, 호사카 유지 교수에 의하면, 경
도 위도가 없는 지도이고, 울릉도와 독도의 2섬을 그린 것은 위치만 그린 것이
지 일본 영토로 그린 것은 아니며, 개정판의 울릉도(죽도)·독도(송도) 부분을 확
대해 보면, “고려를 보는 것이 출운국에서 오키섬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見高麗
猶雲州望隱州)”는 문자를 2섬 위에 써넣었는데 이 문구는 『은주시청합기』의 결
론 문구와 같은 것이어서 울릉도·독도 2섬이 고려의 것이고 일본 영토가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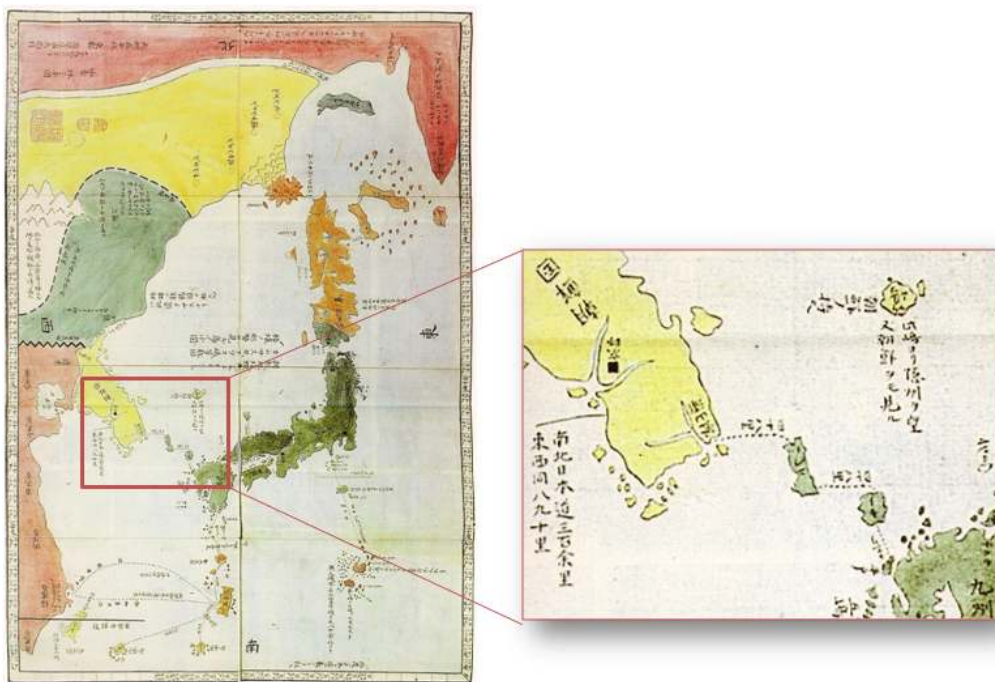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울릉도, 독도 부분 확대도. (호사카 유지 교수 제공).
은주시청합기의 설명과 동일하여 울릉도(죽도)·독도(송도)를 조선 영토로 간주하
고 있음.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도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일본의 최고 권위있는 187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일본의 유명한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속지지도에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가 있는데, 각국 영토를 나라별로 달리 채색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조선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는 바, 이 지도는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그리고 조선의 색인 황색을 채색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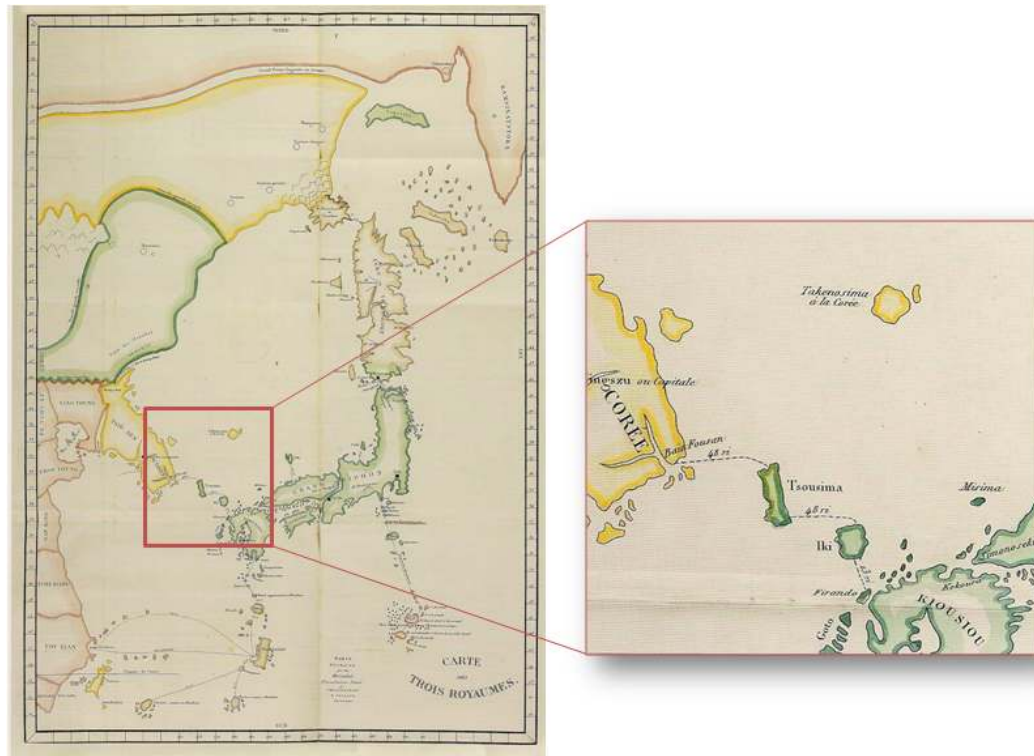
이 지도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명료하게 하기 위해 그 위에 다시 “조선의 소유(朝鮮ノ持ヘ)”라고 글자까지 써 넣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백히 한 것입니다.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삼국접양지도』.

② 하야시 시헤이의 1875년 『삼국통람도설』과 그 부속지도 『삼국접양지도』를 독일인 클라프로트(J. Klaproth)가 1832년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하였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한국은 황색, 일본은 녹색으로 채색했는데, 동해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색인 황색으로 채색해서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하였습니다.

클라포르트는 독도와 울릉도의 황색 섬 위에 다시 “Takenoshima à la corée(다케시마는 조선의 것)”이라고 써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밝혔습니다.



하야시의 『삼국통람도설』과 『삼국접양지도』를 독일인 클라프로트(J. Klaproth)가 1832년 프랑스어로 번역출판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색깔인 황색으로 칠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영토임(Takenoshima à la corée)”를 기록한 지도.

6. 서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규정하고 그렸습니다.

①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B. B. D'Anville)이 1737년에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ée)』를 그렸는데,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 영토로 그렸습니다. 당빌의 지도에서는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했습니다.



1737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 B. B. 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 동해안에 더욱 근접하게 그려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더욱 명료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② 영국의 지도학자 보웬(E. Bowen)이 1752년에 그린 『조선왕국도(Carte du Royaume de Kau-Li ou Corée)』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한반도 동해안에 매우 근접하게 그려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백히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의 명칭을 “조선(한국)해”(Mer de Corée)라고 표기한 것도 주목할 특징입니다.



영국 지도제작가 보웬이 1755년에 그린 『조선왕국전도』(서울역사박물관 소장). 독도와 울릉도를 한반도에 더욱 근접하여 그려서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나타내었습니다. 동해를 ‘조선해’(Mer de Corée)로 표기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이밖에 서양의 18·19세기 지도로서 한반도 주변의 섬들을 그린 지도들은 울릉도·독도를 모두 한국 영토로 인지하여 그리고 있습니다.

7.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 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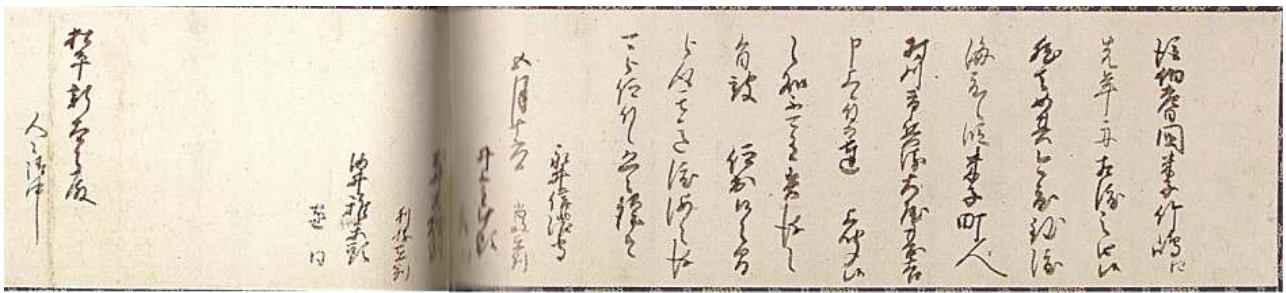
① 일본이 1592년~1598년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일본군은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들어와서 주민을 학살하고 노략질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주민 피살을 막기 위해 울릉도를 비워두는 공도(空島)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이 틈에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어부 돛토리번 호우키주(伯耆州) 요나고(米子)의 오야(大谷甚吉)와 무라카와(村川市兵衛) 2가문의 청원을 받고 조선 정부 몰래 2가문에게 1618년(일설 1625년) 울릉도에 건너가는 허가장인 『죽도도해면허(竹島渡海免許)』와 1656년(일설 1661년)에 독도에 건너가는 『송도도해면허(松島渡海免許)』를 내주었는데, 이 “도해면허”는 당시 외국에 건너가는 것을 면허해 준 허가장이었습니다. 1660년의 오야와 무라카와 2 어부가문의 왕복서한에는 “죽도 안의 송도”(竹島之內松島)라고 써서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독도 도해면허는 울릉도 도해면허에 따른 부속적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해면허”의 대상지역은 “외국”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2008년-10포인트』 (3)은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를 갖고 “송도(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의 유일한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반대가 진실입니다. 도해면허는 오늘날의 “패스포트”와 같은 “외국도항허가장”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이 아닌 “외국”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는 일본의 독도영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다른 나라인 조선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도해면허”가 영유권의 증명이라면, 일본 측은 독도영유권 주장이 아니라 먼저 울릉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논리적일 것입니다.



<죽도도해면허 사진>. (일본 요나고 시립산악역사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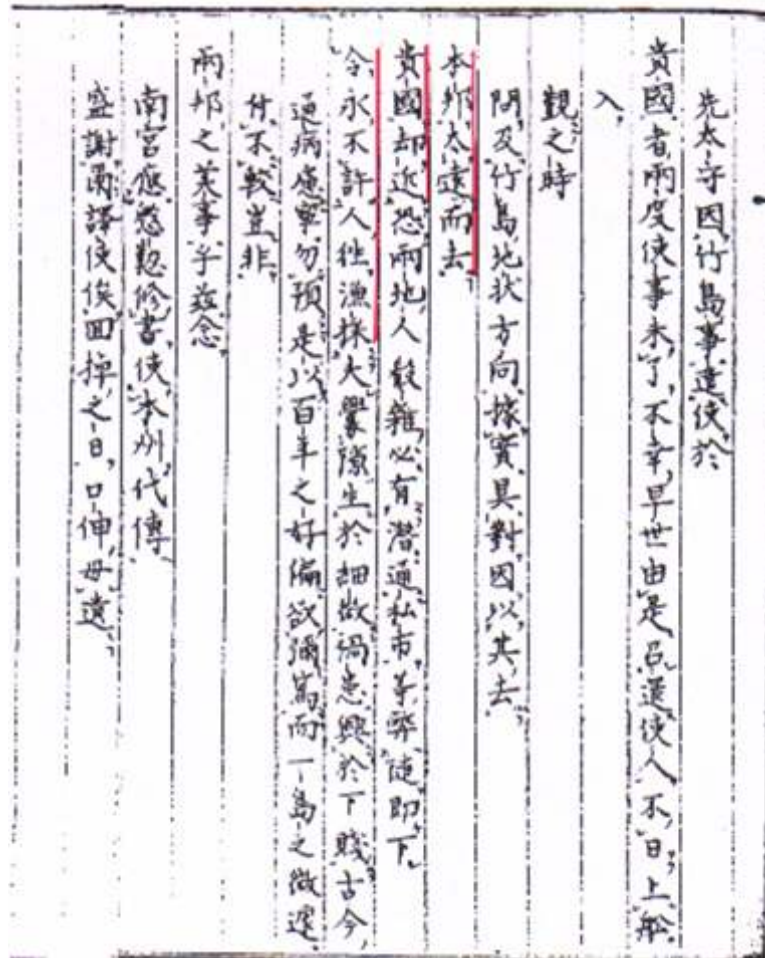
② 1693년 봄에 안용복(安龍福)이 이끈 조선 어선단이 고기잡으로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 어부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협상을 제의하여 안용복이 일본어선에 올랐더니, 그들은 안용복을 일본으로 납치해 갔습니다. 안용복은 일본의 막부 고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독도의 영유권 논쟁이 벌어졌는데,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과 관백은 1696년 1월 28일 마침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조선 울릉도·독도에의 고기잡이 나감과 도해(渡海)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일본 어부들의 조선 울릉도·독도에의 출어를 엄금하였습니다.



1696년 1월 28일 일본 도쿠가와 막부 장군과 관백이 번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울릉도·독도를 조선영토를 재확인 결정하고 일본어부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가 취소된 회의록 일부. (신용하 교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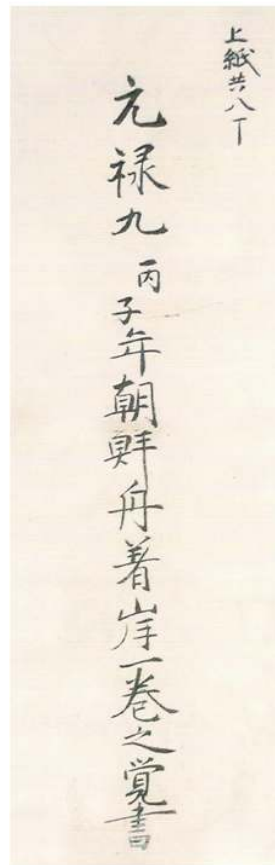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이전 두 가문에게 내어준 “죽도도해면허”와 “송도도해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 폐지하였습니다.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일본 어부들의 조선 울릉도·독도에의 출어를 금지시켰으니 친교를 계속하자는 외교문서를 1696년 조선 정부에 보내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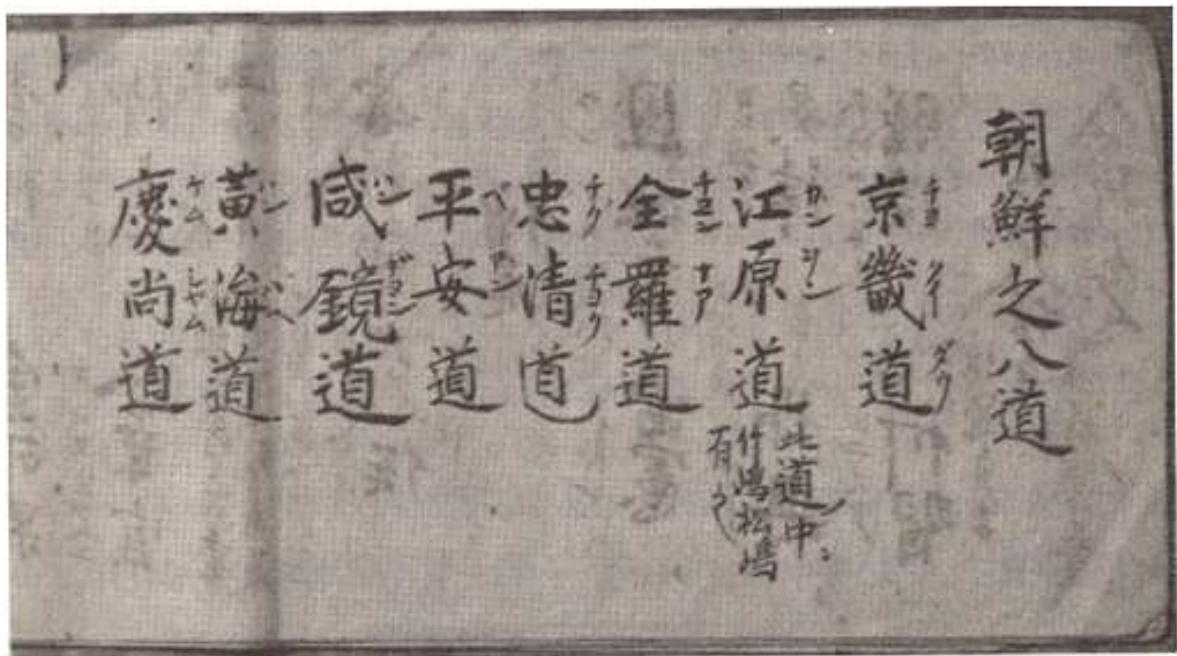


1696년 1월 일본측이 울릉도·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고, 일본인의 울릉도·독도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측에 알려온 전달서. (신용하 교수 제공).

③ 일본 외무성은 최근 『2008년의 10포인트』 (5)에서 『속종실록』에 기록된 안용복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시마네현의 무라가미(村上助九郎)씨 소장의 『원록 9 병자년 조선주착안 일원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등과 그 중의 조선8도 문서 기타 기록들(예, 태정관문서)에 안용복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 공술조서. (원록9년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각서, 동북아역사재단 제공).



강원도 안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있음을 표시한 1696년 ‘조선지팔도’ 문서.
(무라카미家조 소장, 선우영준 박사 촬영).

특히 『조선의8도』 문서의 ‘강원도’아래 『이 도 중에 ‘죽도’, ‘송도’ 있음』이라는

기록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영토이며 강원도 소속이었음을 또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④ 당시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도쿠가와 막부에 대해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자 막부의 관백은 “도해면허는 요나고(米子) 마을의 어부가 조선의 그 섬에 고기잡이하러 건너가겠다는 청원을 허가한 것이며, 그 섬을 일본이 빼앗은 일이 없으므로 다시 이를 돌려준다고 말해서는 안되고, 오직 일본 어부들이 건너가서 고기잡이 함을 금지시키면 족하다”는 요지의 설명을 했음이 『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朝鮮通交大紀 八】
 此年(○元祿八年)十月 天龍院公(○宗義眞) 東武に勤せらる、よりて執政阿部豊後守稟すに、竹島一款、先太守、使をして論談せしむるもの今洙に三年なり、彼國固く竹島を以て其國の地なりとして、終に我に聴く事なし、如何といふを以てせらる、翌丙子年(○元祿九年)正月に至り、豊後守諭に、竹島の地、因幡に屬せりといへども、また我人居住の事なし、台徳君(○徳川秀忠)の時に在て、朱子村の漁人其島に漁せん事を願ひしに依て是を許されしなり、今其地理を計るに、因幡を去るもの百六十里許、朝鮮を距る四十里許なり、是曾て彼か地界たる其疑なきに似たり、國家若兵威を以て是に臨まば、何をもとむとし得べからざらむ、但無用小島の故を以て、好みを隣國は失する、計の得たるにあらず、しかも其の初是を彼に取に非ざる時は、今また是を返すを以て詞とすべからず、唯我人の往て漁するを禁ぜらるべきのみ、今朝議以前に同じからず、其相争ふてやまざらむよりは、各無事ならんにはしかじ、宜しく此意を以て彼國に諭べしといふを以てせらる、此年十月、彼國下同知、宋判事をして來り使せしむ、又此年夏、朝鮮人十一人因幡州に來り、事を東武に啓するを以てせしに、鈞命して是を逐同されし事あり、天龍院公、よりて朝旨を兩使に諭し、また老臣をして兩事を書し示さしむ、

도해면허의 내용과 취소의 이유를 밝힌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 관백의 논담을 기록한 ‘조선통교대기’(1725년 발행)의 부분.

일본 외무성은 『2008년의 10 point』의 (4)에서 이 때 도쿠가와 막부의 도항 금지는 울릉도에만 해당한 것이고 독도에는 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 명치 정부의 1876년 내무성 문서와 1877년의 태정관문서는 이 때 울릉도와 그 외 1도인 독도(松島)에도 도쿠가와 막부의 도항 금지가 내려졌음을 인지하여 본문에서 설명했습니다.

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라는 일본 도쿠가와 막부의 재확인으로 울릉도·독도 영유권 관제 논쟁은 1696년에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 정권은 집권이 끝나는 1868년 1월까지 울릉도·독도에 조선의 영유권을 잘 존중하였습니다. 1832년 하지 우에몽이란 사람이 울릉도에 들어가 자 그를 처형하고, 1832년 2월 나무로 만든 경고판을 세워 다른 나라로 도해(渡海)함을 엄금하였습니다.



1839년 독도·울릉도 도항금지 경고판. (시마네현 하마다 향토자료관 소장, 이상태 교수 제공).

8. 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확인했습니다.

① 일본에서 1868년 1월 도쿠가와 막부 정권이 붕괴되고 새 메이지(明治) 정부가 수립되자, 일본 새 정부의 태정관(총리대신부)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외무성 고관들을 조선에 파견하면서, 14개 항목에 대한 내탐조사를 훈령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부속(朝鮮附屬)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해오라는 훈령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과 외무성이 1869년 당시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부속령임을 잘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외무성 고관들의 내탐보고서가 1870년의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고, 이 내탐보고서는 일본제국주의가 치성했던 1930년대에 간행한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제3권에 수록되어 전세계 주요 대학의 도서관에 보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1869~1870년에 일본 외무성과 태정관이 지령한 이 조사항목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조선부속령으로 확인한 명백한 실증자료로서, 『일본외교문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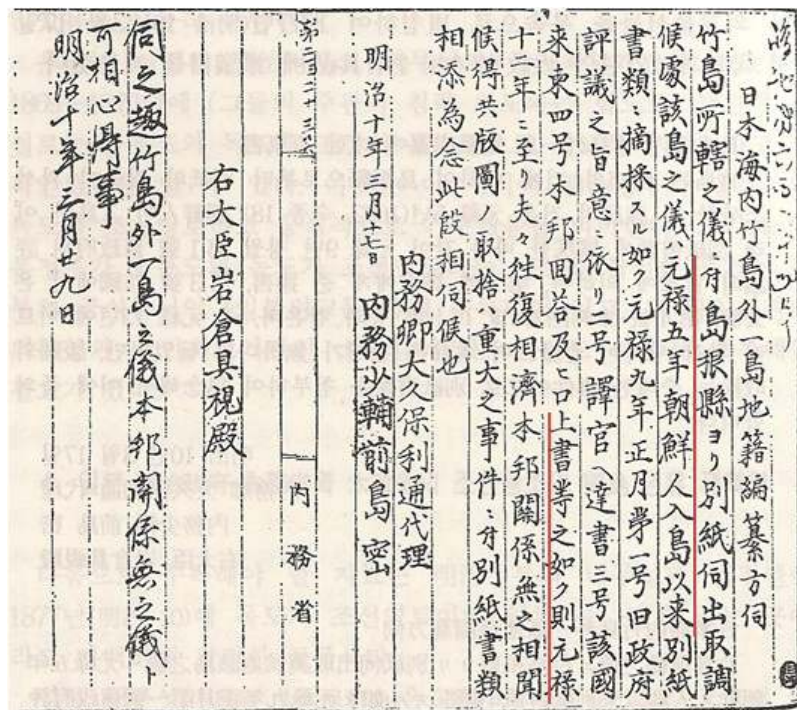
이 외교문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부속영토임을 극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2 이 때에 일본 메이지 정부가 울릉도·독도가 조선부속령임을 알면서 ‘내 탐’해 오라고 훈령한 것은 일본이 이 때에 비밀리에 울릉도·독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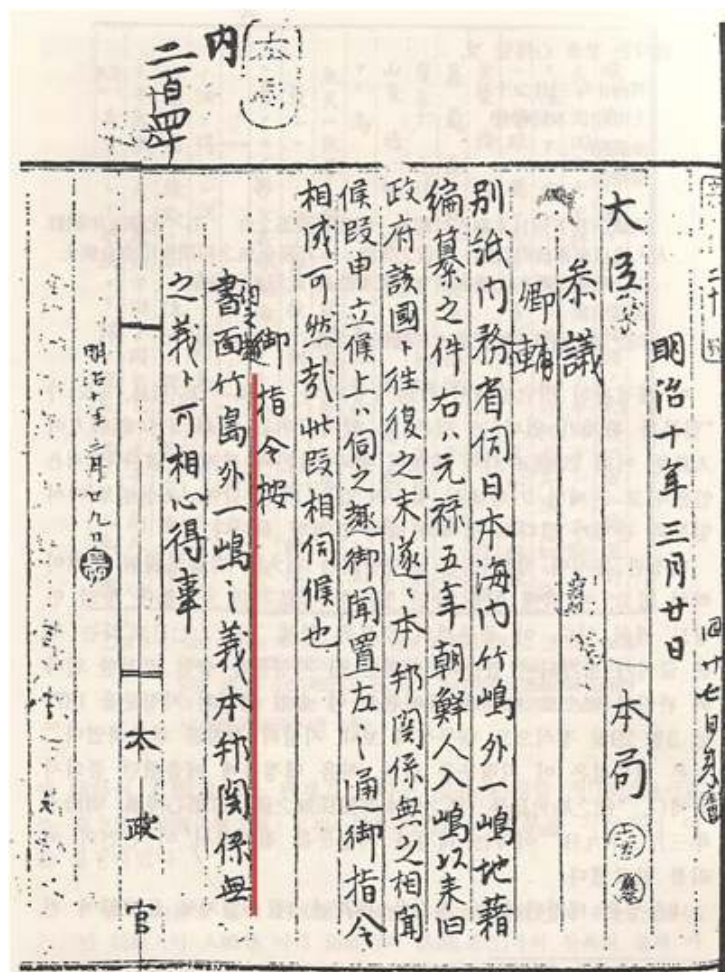
① 일본내무성은 1876년 근대적 일본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방현에 자기 현의 지적도를 작성해 보내라고 훈령했는데, 시마네(島根)현에서 동해 가운데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를 시마네현에 포함해서 그려 보낼까의 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 간의 조사 결과 1693년 조선인 입도후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이라 울릉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토문제는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총리대신부)이 최종결정할 중대사항이라고 보고, 태정관 우대신 이와구라(岩倉具視)에게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의 지적편찬에 관한 질문서를,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결정서 등과 그 외 1도(송도)가 독도(松島)임을 설명하는 부속문서를 붙여, 태정관의 최종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요청한 질문서와,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고 결정하여 내린 지령문을 첨가 기록한 공문서. (일본국립공무서관 소장, 신용하 교수 제공).

② 일본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의 질의서를 재검토한 결과, 1693년 조선인(안용복)의 입도 이래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국 사이의 외교문서 왕복후 울릉도(죽도)와 그 외 1도(독도, 송도)는 일본과의 관계가 없는 조선 땅임이 명백히 되었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메이지정부 태정관은 1877년 3월 20일자로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죽도)와 그외 1도(독도, 송도)는 일본과는 관계없음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요지의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 보내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고 일본영토가 아님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와 그 외 일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는 곳” 이므로 일본 지적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결정을 내무성에 내려보낸 태정관 공문서.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신용하 교수 제공).

일본 내무성은 1877년 3월 29일자로 원래의 품의서 끝에 태정관의 훈령을 적어놓은 다음, 1877년 4월 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고 일본과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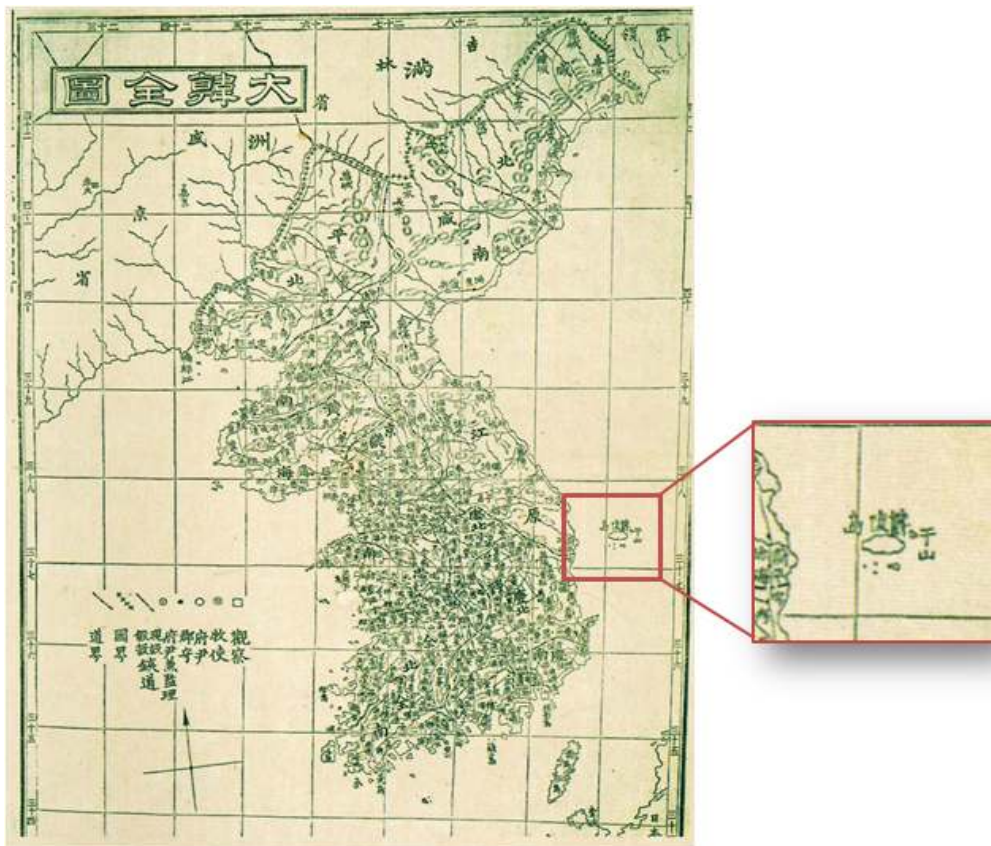
가 없는 땅이라는 이 훈령을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조선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적도에서 빼라고 훈령하였습니다.

이 태정관 훈령 문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일본 국가최고기관의 공문서로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일본 외무성은 『2008년의 10포인트』 (4)에서 1696년 1월 일본 도쿠가와 막부(旧政府)가 취소한 것은 “울릉도(竹島)도해면허” 뿐이고, “독도(松島)도해면허”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위의 내무성 문서와 태정관 문서는 외무성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잘 증명해줍니다. 위의 내무성 문서와 태정관 문서는 元祿 5년(1693년) 조선인(안용복)이 일본에 온 후 도쿠가와 막부(구정부)와 조선정부가 외교문서 왕복후 울릉도(竹島)뿐만 아니라 그 외 1도(독도, 松島)도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여, 독도(松島)도해면허도 취소되고, 독도에의 도항이 금지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습니다.

① 울릉도는 개항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불법 입도하여 거주하기 시작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조하므로, 대한제국은 1900년 6월 내부 조사관 우용정(禹用鼎), 부산 해관 세무사 프랑스제 영국인 라포트(E. Laporte)와 일본인 관리 주 부산 일본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赤塚正助) 등으로 구성된 국제 조사단을 울릉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케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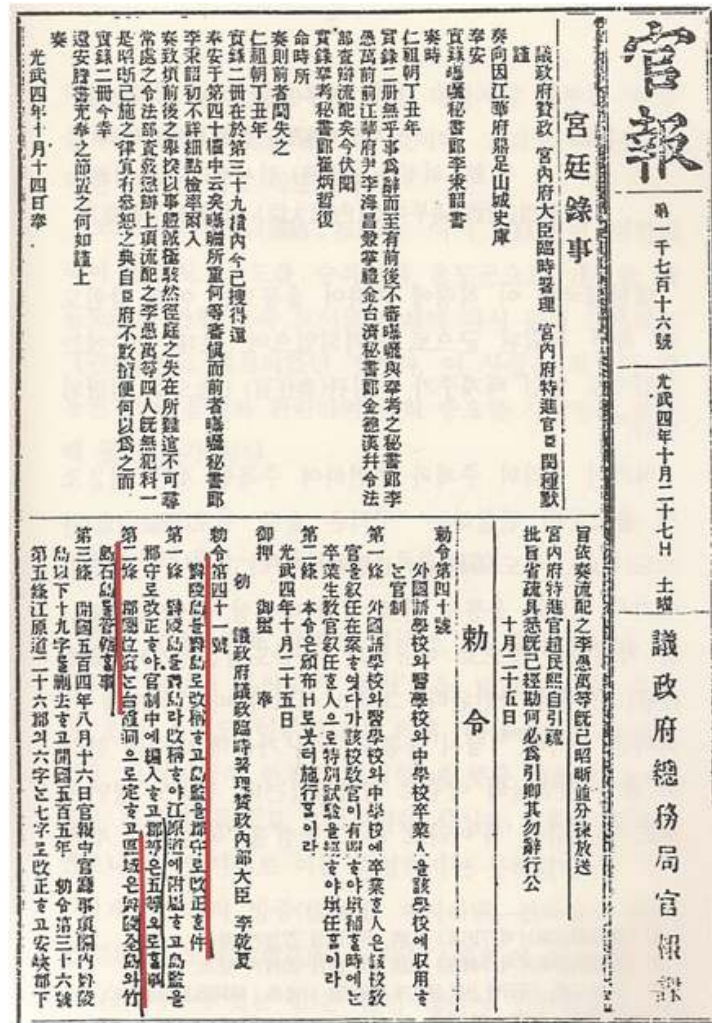


1899년 <대한전도>, 대한제국 학부에서 제작 배포한 표준지도로,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위치하고, 경도와 위도가 당시의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찬 교수 제공).

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후에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서 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종래 강원도 울진현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를 이번에는 독립시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를 “울도군”으로, 격상시키고, 울도군의 관할지역을 울릉도와 죽도(죽서도)와 석도(石島, 獨島)로 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관제 개정 사실을 중앙정부의 『관보』 1900년 10월 27일 자에 게재고시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1900년 칙령 제41호의 게재고시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石島, 獨島)의 대한제국 영유가 서양국제법으로도 다시 한번 더 세계에 공포된 것입니다. 물론 이 때에 일본측은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수록한 『관보』. 1900년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게재하였습니다.

② 이 때 독도를 종래의 명칭 ‘우산도’로 호칭하지 않고 “石島(독도, 獨島)”로 표기한 것은 공도정책이 폐지되어 1883년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온 울릉도민들이 사투리로 돌(Rock, Stone)을 “독”이라고 발음하여 독도를 돌섬(Rock islet)이라는 뜻의 지방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돌섬”은 뜻을 취하면 “石島”가 되고 음을 취하면 한자로 “獨島”로 표기되고 있었는데, 뜻을 취해 “石島”로 표기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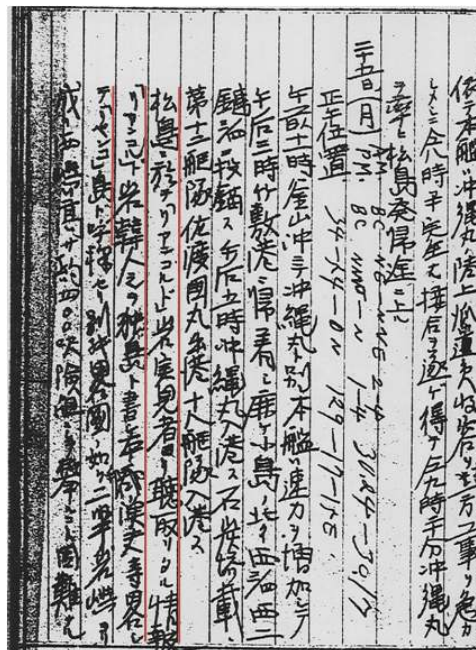
또한 이 때 국제법에 밝았던 조사단의 프랑스계 영국인 라포르트(E. Laporte)는 독도가 “Liancourt Rocks”라고 서양 호칭도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도 “리앙쿠르 石島”가 되므로 겸하여 石島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일본 해군성 수로국이 1882년 발행한 『일·지·한 항로이정일람도(日支韓航路里程一覽圖)』에서는 “우산도”를 “리앙꼬르드石”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즉 한국말 ‘독섬’(돌섬)은 뜻으로 한자표기하면 “石島”가 되고 음으로 한자표기하면 “獨島”가 되는 것입니다. ‘독도’는 대한제국 을도군수의 행정통치기간에 일본에서는 “리앙꼬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군성이 울릉도 명칭을 종래 독도에 붙였던 “松島”(마츠시마)로 바꾸었기 때문에 독도에는 이름이 없어 “리앙꾸르드 石”이라는 서양 명칭을 빌려다 사용한 것입니다.

③ 일본 외무성의 “2008년-10포인트” (6)은 “獨島(독도)” 명칭은 1906년 을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서 처음 나오는 호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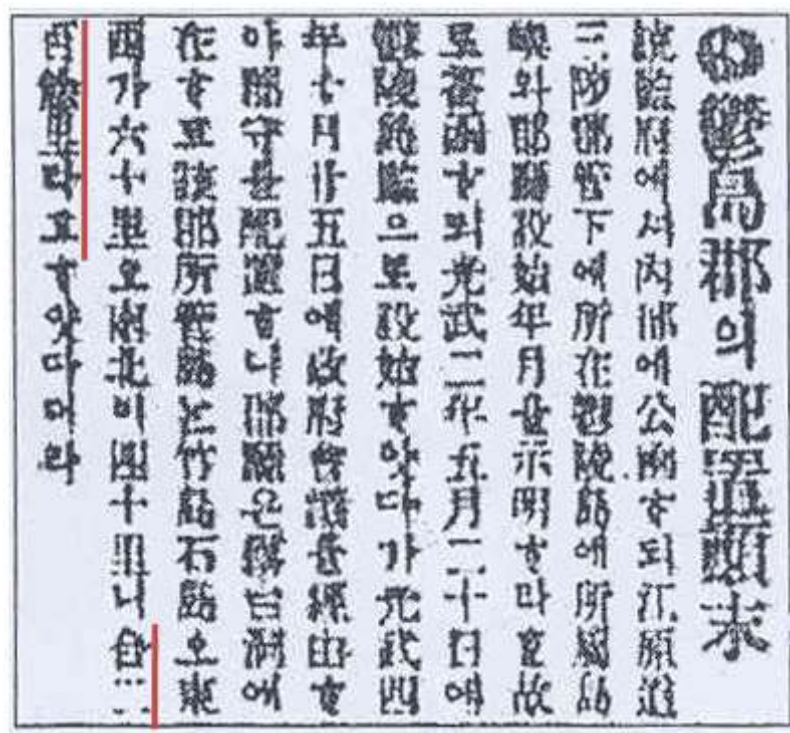
일본측이 러일전쟁 시기 독도에 일본해군 망루를 설치하기 위해 조사차 군함 ‘신고호(新高號)’를 파견했을 때, 울릉도에서 청취한 정보로서 신고호는 1904년 9월 25일자 보고에서 “리앙코르드岩은 한국인은 이를 “獨島”라고 쓰고, 일본인 어부들은 “리앙꼬島”라고 호칭한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울릉도민이 독도(우산도)를 “獨島”라고 썼고, 일본인들은 “리앙꼬도”라고 불렀음을 기록한 1904년 9월 25일자 일본 군함 신고호 보고. (신용하 교수 제공).

울릉도의 한국인들은 1904년 이전부터 이미 독도를 “獨島(Dokdo)”라고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④ 일본측이 1906년에 대한제국 정부에 울릉도 소속 섬들을 질의해 왔을 때, 대한제국정부는 1900년 10월 25일 정부회의를 거쳐 군수를 배치했는데 울릉도의 부속도서는 죽도(竹島:죽서도를 의미)와 석도(石島)이고, 그 거리는 합이 200여리(약80여km)라고 답하였습니다. 울릉도에서 100리 또는 20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은 동해에는 獨島밖에 없으므로 石島가 곧 獨島임은 또 한 번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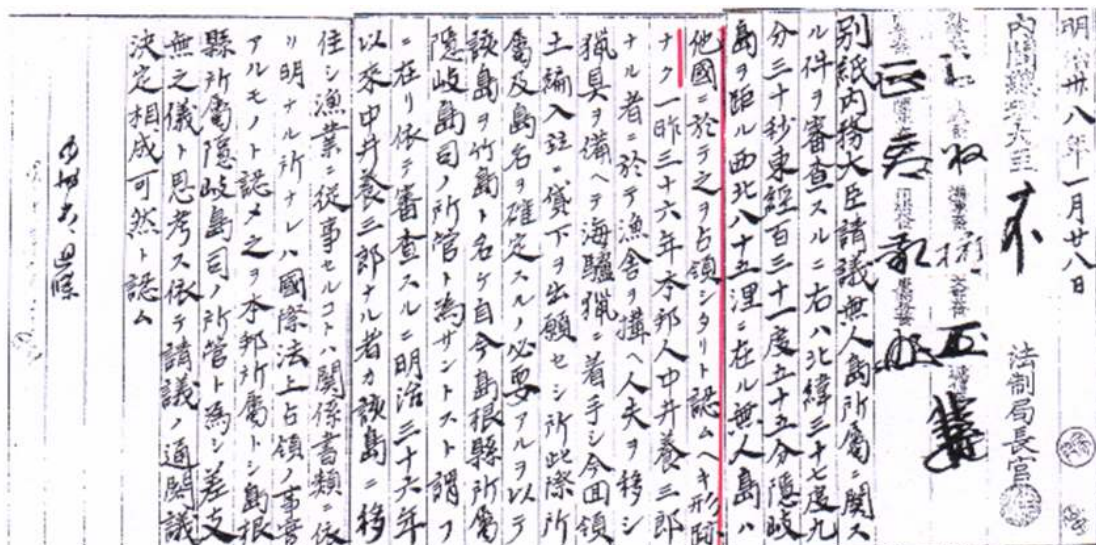
석도가 울릉도에서 200여리(80여km) 떨어진 섬임을 밝혀 석도가 곧 독도임을 증명한 대한제국 내부의 공문서를 보도한 『황성신문』 1906년 7월 13일자 기사.

11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거듭거듭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①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독도에 일본해군의 망루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에, 일본 시마네현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郎)가 독도소유자 한국정부에 독도사용권 대부 청원서를 제출하려 하자, 일본정부는 이를 영토편입 청원서로 바꾸어 일본정부에 신청하게 하고 이를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여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을 붙인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때 일본정부가 주장한 것은 독도에 대해 “다른 나라가 이 섬(독도)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임자없는 “무주지(無主地)”라고 주장해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독도가 1905년 1월에 무주지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有主地)임이 증명되면, 이 “무주지 선점론”에 입각한 일본 정부의 독도영토편입 내각회의 결정은 국제법상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내각회의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타국이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고 ‘무주지’임을 전제로 일본영토에 편입한 결정문. 이 결정은 1905년 1월 28일 이전에 독도가 주인이 있는 ‘유주지’임이 판명되면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가 되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②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영토로 확정된 이래 계속하여 한국영토로 존속해왔으므로, 역사적 진실은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예컨대, 이 책자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만으로도 1696년 1월 도쿠가와 막부의 공문서, 1869~1870년의 일본 태정관과 외무성의 공문서, 1869~1870년의 일본 태정관과 내무성의 공문서에서 잘 증명되는 바와 같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1905년 내각결정에 앞서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 “우산도”라고 처음에는 반대 의견을 진술했었습니다.

③ 일본정부는 한국정부 몰래 독도를 비밀리에 침탈하는 내각회의 결정을 했으나 이를 관례대로 중앙정부의 『관보』에 고시(告示)하지 못해 당시 국제법의 영토편입 조건을 이것마저도 다 충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경에 주일본 한국공사관이 활동하고 있어서, 중앙 『관보』에 고시하면 이를 안 한국공사관의 즉각 항의하여 비밀이 전세계에 탄로되고 독도 영토편입이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약 1개월 가까이 고심하다가 이를 시마네현의 『현보』에 1905년 2월 22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마네현 『현보』는 시마네현 지방공무원의 내부자료이므로 한국 정부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시마네현 지방신문에 보도되는 경우에도 주한 일본공사관이나 한국인들이 구독하는 신문이 아니므로 거의 완벽하게 독도 침탈의 사실을 비밀에 쌓아 둘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1905년 연말까지도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④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결정 사실을 안 것은 1906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은 이를 알게 되자 「본군 소속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되었다고 일본인들이 주장한다」고 강원도 관찰사에게 보고했고, 강원도 관찰사는 중앙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 내무대신은 즉각 독도영토침탈을 단호하게 부정하여 “독

도를 일본영토라고 하는 주장은 전혀 이치가 없는 주장이고 심히 경악할 일이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의정부 참정대신(총리대신서리)은 “독도의 일본의 영지 운운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인의 동태를 다시 보고하도록 훈령하였습니다.



강원도 관찰사 서리가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를 전재하여 참정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와 그에 대한 참정대신의 지령문. 울도군수 심흥택은 이 보고서에서 “본군소속 독도가”라고 하여 독도가 자신의 통치지역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참정대신은 “일본의 독도 영지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본 주장에 항의하고 비판하였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그러나 한국 중앙정부의 이러한 항의는 일본 정부에 외교문서로 발송되지 못하고 서류로서만 규장각에 보관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을 강제하여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아가 버리고, 1906년 1월부터는 일제 통감부가 한국정부의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 때 강력히 항의한 것은 증거가 남아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항의 사실은 당시 한국의 주요 신문인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皇城新聞)』에 보도되었습니다. 예컨대, 1906년 5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는 ‘무변불유(無變不有)’라는 표제로 “독도를 칭하여 말하기를 일본속지라 한” 것은 ‘심히 아

연실색할 일'이라고 한 내부의 합의 지령문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지식인들도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와 같이 일본의 독도침탈에 항의하였습니다.



『황성신문』은 일제의 독도침탈 시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잡보(雜報)’란의 독도침탈 시도에 대한 기사의 표제 활자 크기를 평상시의 4배로 갑자기 높여 발행하였습니다.

⑤ 독도는 한국영토로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였기 때문에, 1905년 독도를 일부러 “무주지”로 전제한 일본의 독도침탈은 처음부터 완전히 “무효”이고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일본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침탈 사실을 중앙 『관보』에 고시하지도 못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은 국제법상 불법의 도탈(盜奪)을 시도한 것이고 완전히 무효입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그 후의 모든 조치도 모두 무효인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2008년-10포인트』 (6)의 설명은 허위의 설명입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가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일본에 새로이 영토편입하고, 새로이 “다케시마”(죽도)라고 이름을 붙여 오키섬의 관리아래 둔다는 의결은 1905년 1월 28일 이전시기까지 “독도”가 일본의 역사적 고유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명백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독도가 역사적으로 이미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1905년에 1월에 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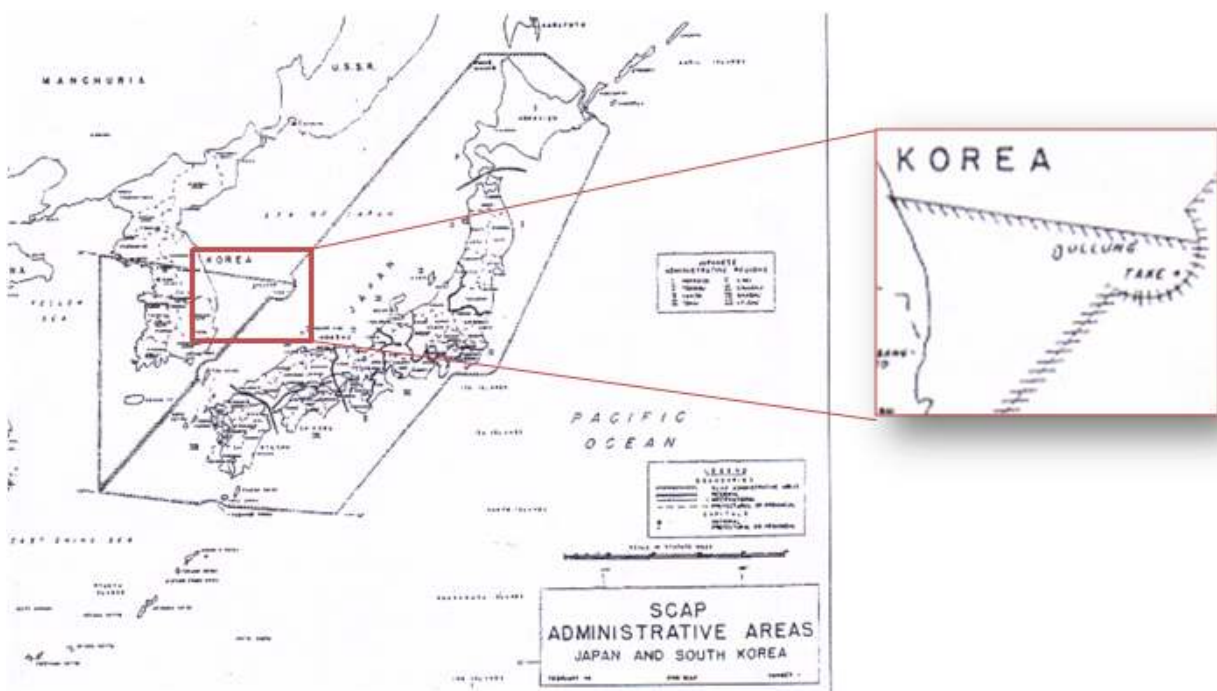
새삼스럽게 “무주지”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새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10년에는 일제의 강점으로 아예 한반도 전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의 패망 후에야 한반도와 함께 회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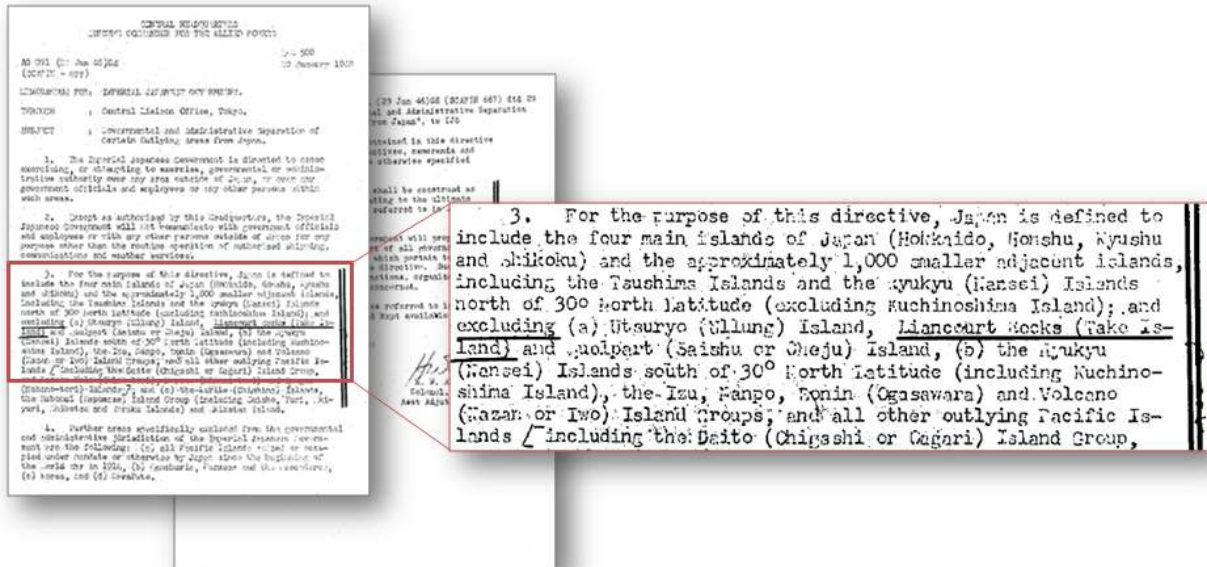
12. 연합국은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지령을 선포했습니다.

①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항복한 후, 동경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구일본제국이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빼앗은 모든 영토들을 원주인에게 반환해주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리앙쿠르 도) 등을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 이 연합국의 결정은 아직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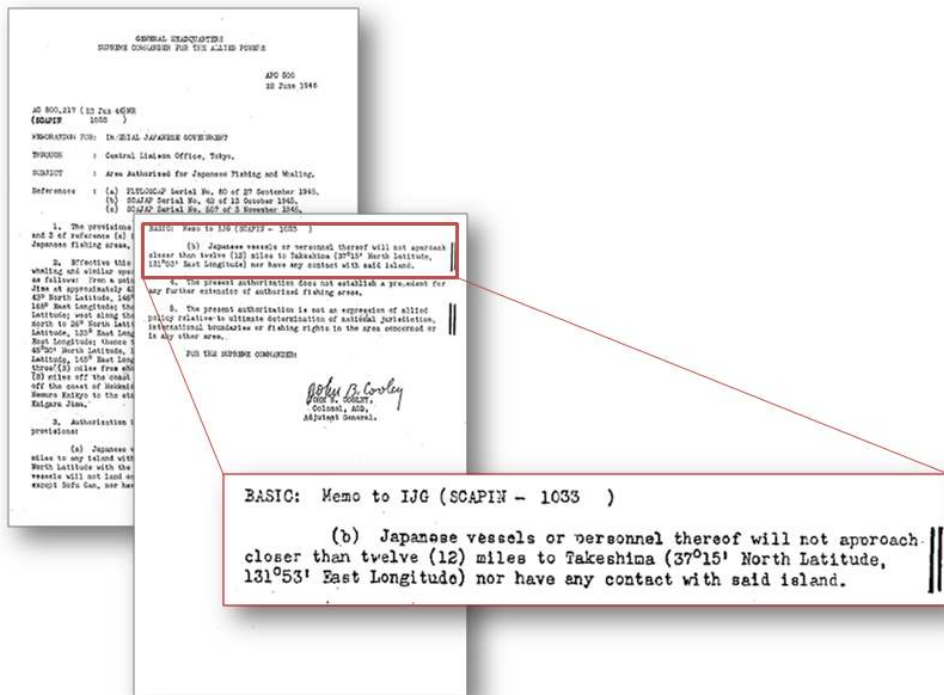


연합국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획한 지도. 독도를 'TAKE'로 표시하고 한국영토에 명료하게 부속시켰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는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를 일본영토에서 분리 제외하여(excluding) 한국에 반환시켰다.

- ②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1033호를 선포하여 일본 어부들의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하여,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습니다.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1033호는 일본 선박이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 접근하거나 독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거듭 명백히 하였습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4월 해체될 때까지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를 수정한 일이 없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확인하고 또 재확인한 것입니다.

③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재독립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주한 미군정(연합국 행정대리)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 모든 부속도서들을 인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이 날짜 현재의 국민과 독도를 포함한 영토를 통치하는 합법적 주권국가로서 공인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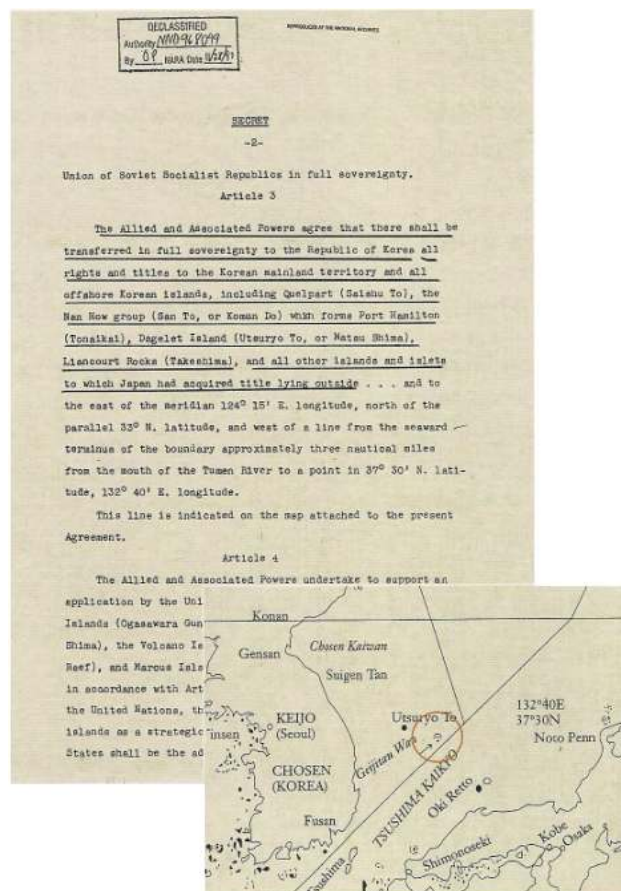
이날 이후는 세계 어느 나라도 독도의 영유권자인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들어올 수 없으며, 독도에서 돌맹이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반출할 수 없도록,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배타적 영토로 국제법상 재확정 공인되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13.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습니다.

① 연합국은 1952년에 일본을 재독립시키기로 하고, 이에 앞서 체결해야 할 ‘평화(강화)조약’의 사전 “준비”로 1950년에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를 합의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 제3항에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 반환할 영토로서 “연합국은 대한민국에게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한국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that shall be transferred in full sovereignty to the Republic of Korea) 합의했는데, 그 섬들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를 포함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였습니다.



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 3항의 독도 등을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에 귀속시킨다는 부분과 부속 지도 부분. (신용하 교수 제공).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해 연합국은 1년전에 사전 “준비한 합의서”로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합의서에도 거둬 독도는 한국의 배타적 영유(완전한 영유)에 속함을 미국 등 어느 1개국이 아니라 연합국 전원의 합의서로 거둬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② 이 합의서는 만일 후에 체결될 일본과의 평화조약 조약문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어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적용해야 할 극히 중요한 연합국의 준비된 합의서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1969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체결했는데, 그 32조에서는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조약의 준비물과 결론의 환경(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을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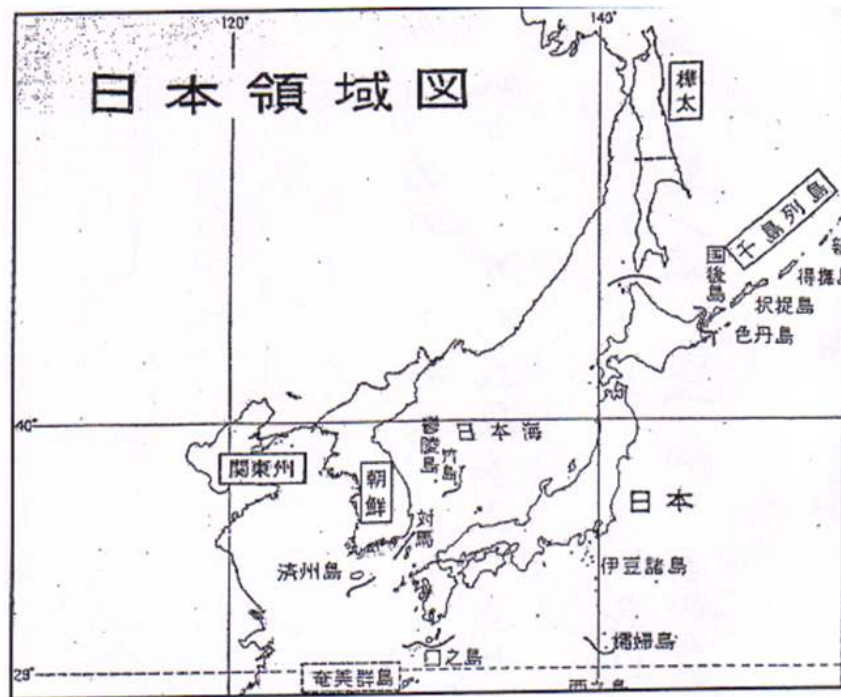
만일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의 조문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영토 문제의 경우 이 “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가장 가까운 직접의 준비물 (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입니다.

이 준비물 제3항에서 독도(Liancourt Rocks, Takeshima)는 대한민국의 완전한(배타적) 영토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4.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 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① 일본은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영토로 확인된 독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맹렬한 로비를 했으나 결국 실패했으며, 연합국은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그대로 두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재독립한 1개월 뒤인 1952년 5월 25일에 일본 마이니찌 신문사가 일본 외무성의 도움을 받으며 『대(對)일본평화조약』이라는 616쪽의 해설서를 발행했는데, 그 첫 장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승인받은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를 게재하면서, 사실대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를 일본에서 제외하여 한국(조선)에 속하게 되었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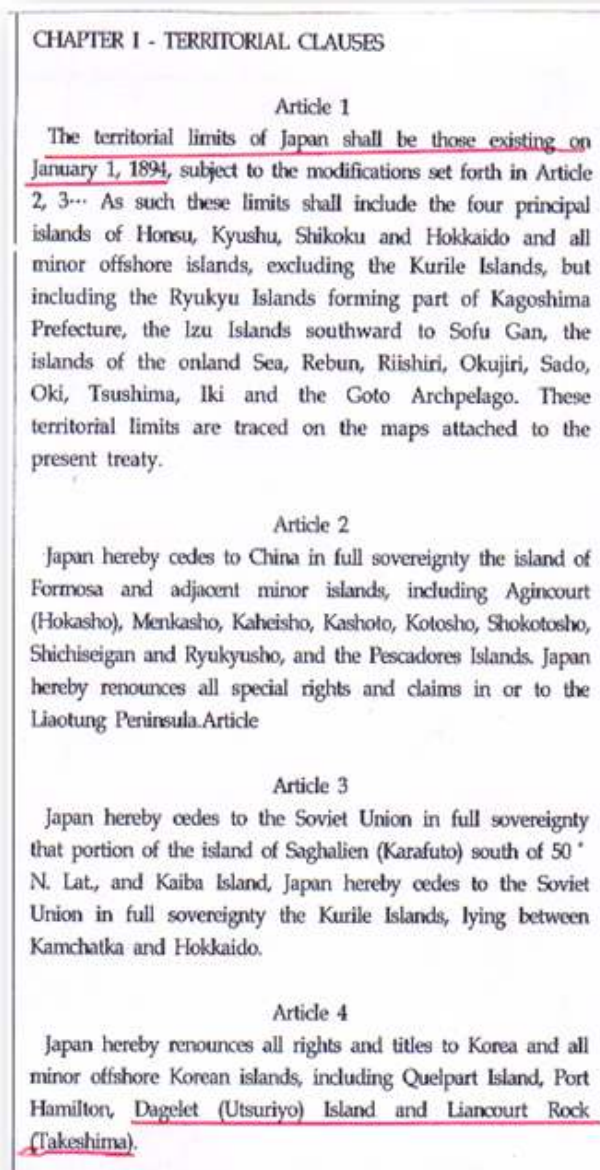


毎日新聞社, 『對日本平和條約』,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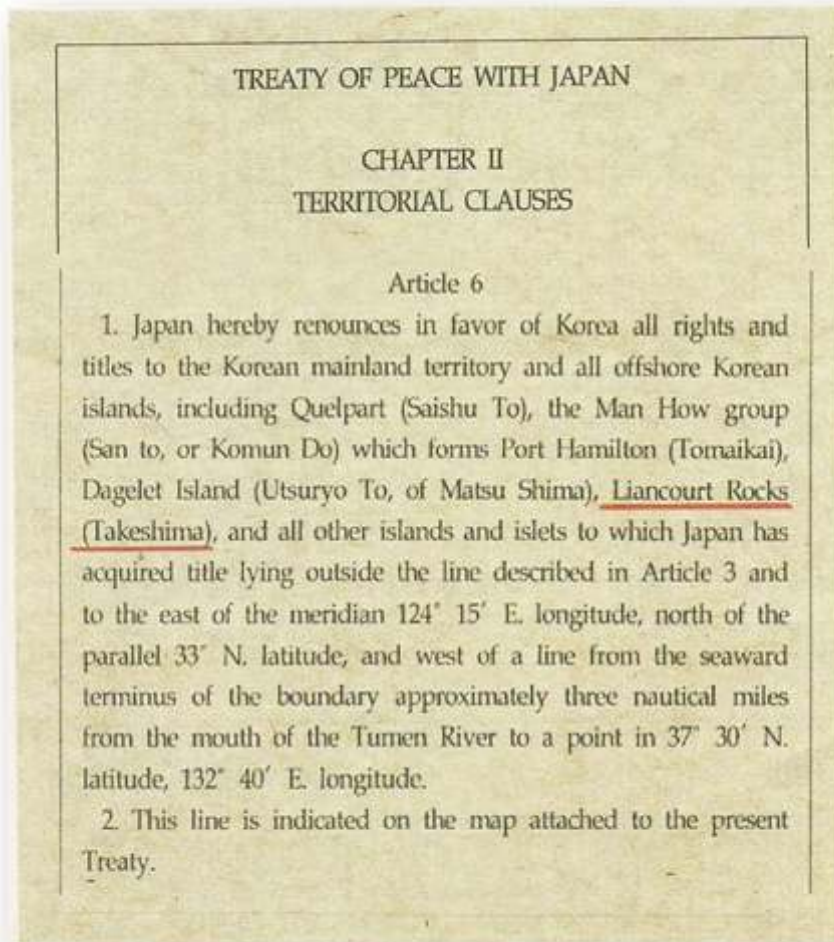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매일신문사가 1952년 5월 25일 총 616쪽의 해설서인 『대(對)일본평화조약』을 발행했는데, 이 해설서의 부속지도인 『일본영역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竹島)를 조선영토로 표시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연합국의 평화조약 체결 준비과정에서 한국영토 독도를 빼앗아 가려는 일본의 로비가 미국에게 맹렬히 전개되었습니다.

미국은 원래 연합국으로부터 평화조약 초안 작성을 위탁받은 직후에는 연합국의 합의서에 따라 189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일본이 영토 야욕으로 침탈한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 반환하는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미국의 평화조약 제1차 초안부터 제5차 초안까지는 5차례 독도(Liancourt Rocks)는 한국의 영토에 넣었습니다.



연합국의 일본영토 정의와 제외의 기준 일자가 1894년 1월 1일임을 밝히고, 울릉도 및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규정한 연합국 『대(對)일본강화조약』의 제1차 미국 초안.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
제5차 미국초안 중 영토 조항 제6항의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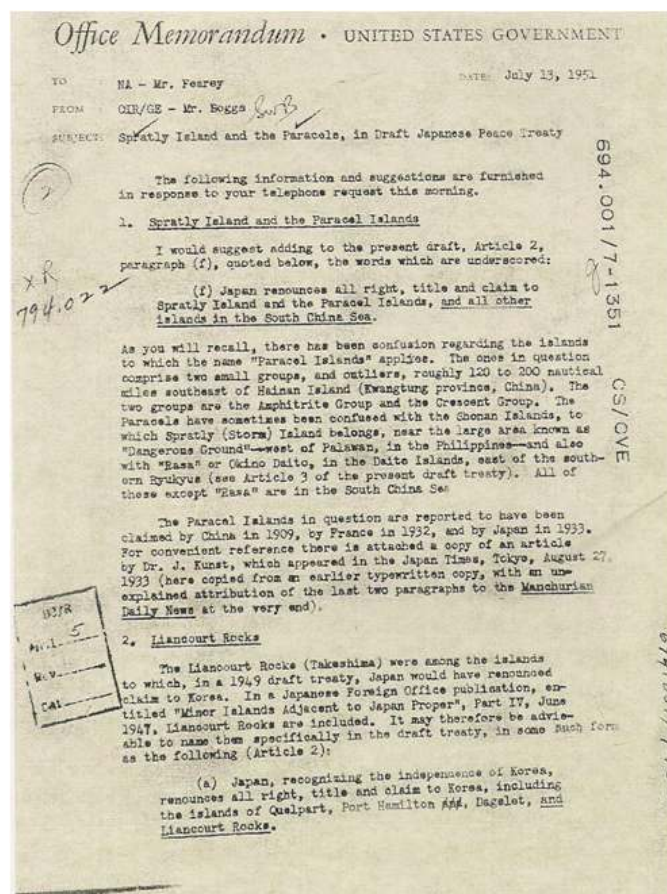
이를 알게된 일본 임시정부가 고문이었던 시볼트(W.J. Sebald)를 내세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 주면 이 섬을 미군의 레이더 기지 및 기상관측소로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맹렬히 로비를 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 러스크도 이를 접수했으며,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사절단 보고서도 이를 접수했으나 한국측의 입장을 덧붙여서 보고하여 중립적 입장을 갖추려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제6차 초안에서 단 1차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초안을 만들어서 연합국에 회람시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른 연합국들은 「합의서」에 따라 진실대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하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미국 제6차 초안에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미국 초안에 의

존하지 않고 독자적 초안을 작성하겠다고 강경히 반대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2008년-10포인트』(7)은 일본 로비에 응한 미국입장 변화만 설명했지, 반대한 영국 입장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제7·8·9차 초안에서 독도 명칭을 조약문에서 아예 논급하지 않고 빼어버리는 방법으로 불관여의 중립적 입장을 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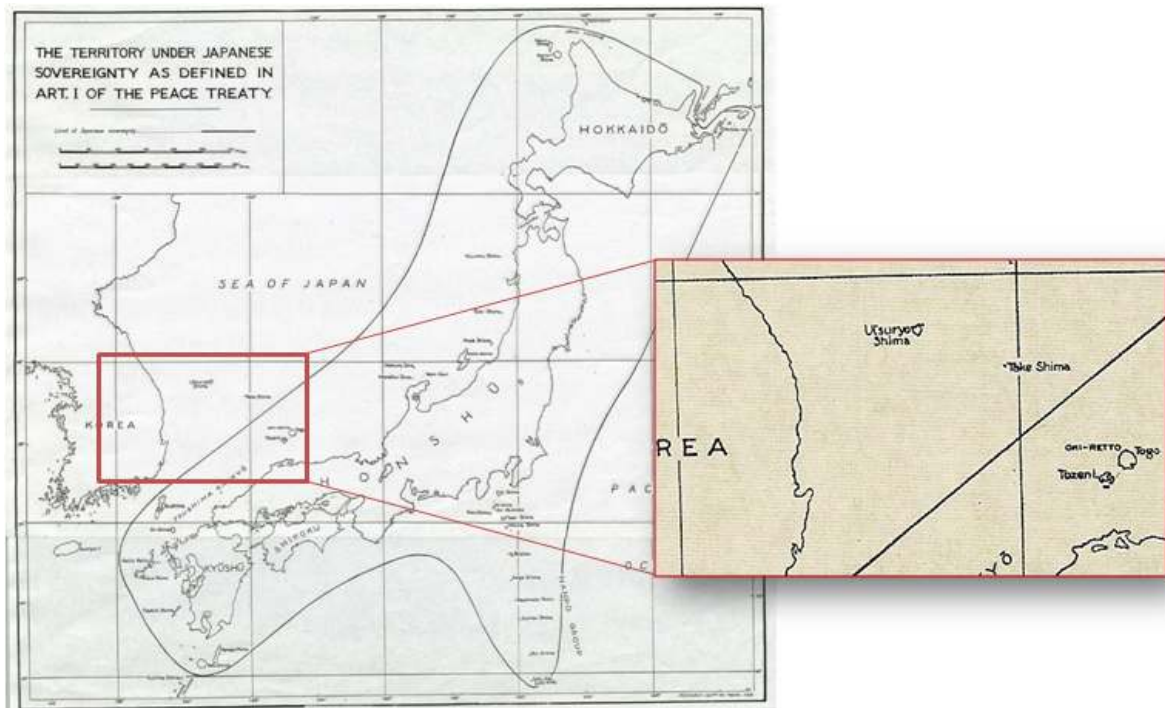
그러나 미국내에서도 미국의 이러한 중립적 입장을 반대해서 독도 명칭을 진실대로 한국영토에 포함시키도록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시되었습니다. 예컨대,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오랫동안 지리문제 전문가로 일한 보그스(Boggs)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년 7월 13일의 답변서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며,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문구를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초안의 문구를 “(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과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 본문에 영토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독도 명칭을 누락시키지 말고, 울릉도 ‘및 독도’라고 독도를 명기할 것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 지리 담당관 보그스(Boggs)의 1951년 7월 13일자 답변서.

③ 영국은 미국의 독도에 대한 중립적 초안에 불만을 품고 독자적인 영국 초안을 제1·2·3차 초안으로 3차례 작성했습니다.

영국 초안은 제주도와 독도는 한국에 포함시키고 대마도와 오키도는 일본에 포함시키는 연합국 『합의서』의 합의 내용을 잘 준수하였으며, 그 부속지도에서도 일본의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하여 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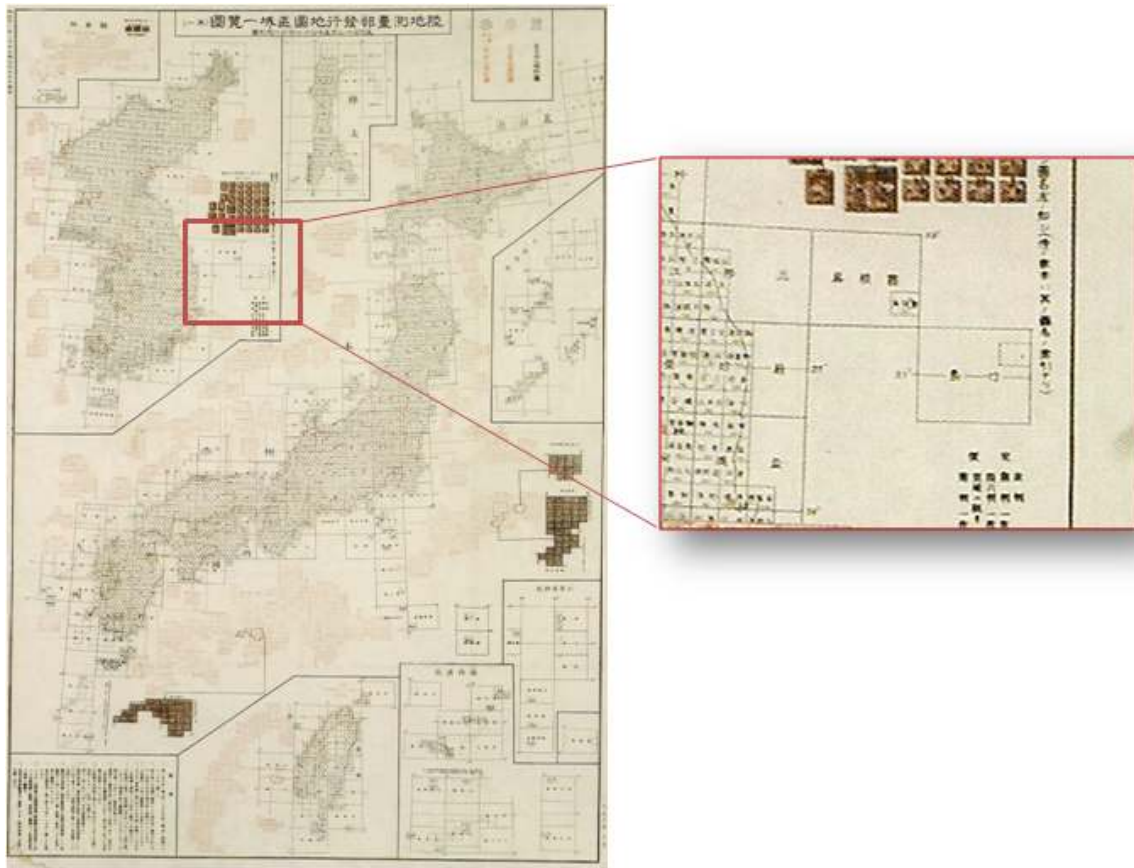
독도를 한국영토에 넣고 일본영토에서 제외한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 영국 제3차 초안의 부속지도. (정병준 교수 제공).

미국은 연합국이 평화회의에 미국 초안과 영국 초안의 2개 초안을 제안하는 것보다 영·미 합동초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하여, 통과된 영·미 합동 초안에서 독도 명칭을 빼어 불관여하도록 “연합국의 대(對)일본 평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로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④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에서 “독도” 명칭이 일본이 포기하는 섬의 명칭에서 빠졌다고 해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준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미국 등이 “일본의 맹렬한 로비 때문에” 독도문제는 이전의 합의에 맡기고 불관여하자는 뜻으로 명칭이 빠졌을 뿐입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3000여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은 평화조약문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으로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영토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주도의 일본 방향 동쪽에 “우도”라는 섬이 있는데, “우도”는 제주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평화조약문에 “우도” 명칭이 없어도 제주도의 영유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도”의 영유국가 되는 것입니다.

1936년 제국주의 일본의 일본군 육군참모본부까지도 1936년의 공식 대일본 제국 『지도구역일람도』에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판정하여 일본 지역에서 제외하고 조선 지역에 포함시켜 분류하였습니다.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대일본제국을 지역별로 구분한 1936년의 공식 대일본 제국 『지도구역일람도』. 여기서 일본군까지도 독도(竹島)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에 포함시켜 일본 구역으로부터 제외하고 조선 구역에 포함시켰다.

“독도”의 경우와 같이 작은 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①국제법의 “부속도서”는 모도(母島)의 영유국가의 영유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독도가 한국 울릉도의 부속도서인가 일본 오키섬의 부속도서인가를 판별하는 방법과 ②“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을 적용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

약 조문의 준비물(Preparatory work)인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판별하는 방법이 국제법상 가장 적법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평화조약 조문에 “독도”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배타적)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화조약에 의해서도 (독도는 일본영토이다 라는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재독립 직후 1952년 5월 25일 마이니찌 신문사의 “대(對)일본평화조약”의 『일본영역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역에서 제외하여 한국 영역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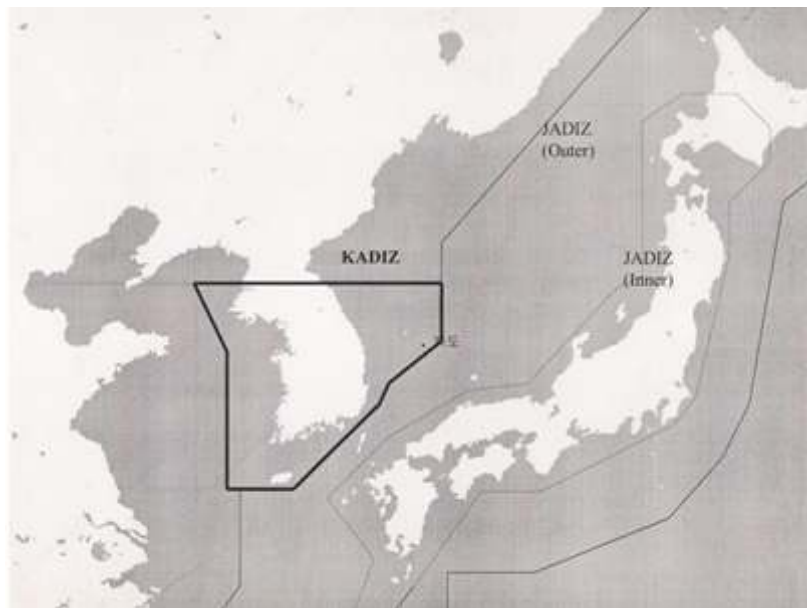
⑤ 일본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하여 1951년 6월 6일 일본 總理府令 제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내에 있는 재산정리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독부령)에서 울릉도·독도(竹島)·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하여 총리부령 제24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인정되고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자, 일본이 재독립한 1952년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총리부령 제24호를 1960년 7월 7일까지 개정하지 않고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총리부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일본 정부도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 영토로 인정되고 일본영역에서 제외되었음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문에서도 ‘독도’가 미해결문제로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국제법상 일본측이 이의가 없음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영토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습니다.

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미공군 포함)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韓國防空識別區域)”을 설정했는데, 독도를 한국영토로 재확인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안에 넣었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은 물론이고 외곽선에서도)에서는 제외하여 오늘날까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공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이 독도(지도의 검은 점)를 포함한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1년 설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

② 일본 외무성은 『2008년-10포인트』 (8)에서 1950년 9월 연합국총사령부가 SCAPIN 2160호로 독도를 미군의 해상폭격연습지구로 지정했고, 1952년 7월에 일·미행정협정에 입각하여 일·미합동위원회가 주일 미군의 폭격훈련구역의 하나로 지정했다가 1953년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해제한 것을 미군(미공군)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간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공군이 일본의 요청에 응해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자, 이를

알게 된 대한민국 정부는 미공군사령부에 항의했으며, 미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미공군의 폭격연습지에서 제외한다고 공식 공한을 보내와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공군이 1953년 3월 폭격연습구역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일본에 통보하고, 그 이후 독도를 폭격연습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조사 후 미공군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인정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③ 유엔군과 미공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항공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안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모든 한국 영토 상공을 사용할 때 24시간 이전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거듭거듭 확인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1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①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의 이미 공인된 완벽한 영토입니다. 또한 독도는 대한민국이 재독립한 1948년 8월 15일 연합국총사령부가 한국정부에 반환하여, 한국 정부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당시의 국민과 영토에 대한 국제법상 완전히 합법적 주권행사를 승인받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독도영유권을 “100” 으로 표시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유권 “100” 을 모두 갖고 있고, 일본은 영유권은 “0” 인 채, 영유권 ‘주장’만 갖고 있습니다.

② 일본 정부가 독도 침탈 전략의 하나로 1954년 9월 25일 대한민국 정부에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위임하자고 제의해 왔을 때, 당시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1954년 10월 28일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재판소에서도 그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영토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소위 독도영토분쟁’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라도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두려고 일본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주장”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The Korean Mission in Japan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with reference to the latter's Note Verbale of September 25, 1954 concerning problem of the possession of Dokdo, has the honor to transmit to the Ministry the view and dec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

1.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clarified on many occasions, Dokdo was and is Korean territory from time immemorial.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futed all kinds of Japanese allegations claiming territorial rights over Dokdo as not only groundless but also unjust.

In as much as the representations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aforementioned Note Verbale are merely a repetition of old ones and based on the utterly groundless assumption, unsupported by facts, that Japan has any territorial rights over Dokdo, the Korean Government refutes it for the same and obvious reasons and grounds as given before.

2. The propos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at the dispute be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s nothing but another attempt at the false claim in judicial disguise. Korea has the territorial rights ab initio over Dokdo and sees no reason why she should seek the verification of her rights before an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t is Japan who conjures up a quasi territorial dispute where none should exist. By proposing to submit the Dokdo problem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Japan is attempting to place herself on the equal footing, even provisionally, with Korea in relation to the so-called Dokdo territorial dispute, thus establishing quasi claims for Japan where were none at the compromise of the complete and indisputable territorial rights of Korea over Dokdo.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독도영유권 재판을 받자는 1954년 9월 25일자의 일본제의에 대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완전한 것이므로 독도영유권 분쟁은 없으며, 일본의 제의는 독도영유권에 한국과 대등한 입지를 만들려는 책략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하여 거부한 1954년 10월 28일자 한국정부의 구술서(외교문서).

1954년 당시 대한민국 외무장관의 답변은 오늘날에도 정당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2008년 10포인트』 (9), (10)은 일본 외무성의 1954년 9월 25일자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합니다.

③ 일본제국주의는 영토적 야욕으로 20세기 초 한국을 침략할 때, 독도가 한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외로운 섬이어서 1905년 일본이 몰래 먼저 침탈했었고, 1910년 한반도 전체를 침탈하였습니다. 연합국은 1945년과 1946년에 일본이 침탈한 모든 한반도와 그 부속섬을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

오늘날 일본 외무성이 또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현 일본정부 외무성이 구 일본제국주의 침략외교를 대한민국에 적용하려고 획책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세계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본 국민들은 현대 일본 정부 외무성이 구 일본제국주의 침략외교를 부활 계승하여 한국 영토를 침탈하려는 시도를 함께 비판하고 모든 나라들이 자유와 독립과 영토주권을 상호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